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가. 제안이유

- 최근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화합에까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공무원의 복장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공무원의 근무시간,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공무원의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시정을 추진하면서 특정 종교 지원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사례는 없을 것임.

4. 토론요지

- 가. 반대토론 : 없음
-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천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에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4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 공무원 중에서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간 외 및 공휴일 등의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휴가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에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에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함으로써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 ③ 여자공무원은 생리 및 임신한 때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⑥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 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부천시(이하 “시”란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현저하게 영리업무를 추구하는 행위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행위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추구하는 행위

제29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8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0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2. 부천시의회 의원

제5장 정치운동

제31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및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 시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②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 시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장·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1호
의결 년월일	2008. 12. 22. (제148회)

제출년월일 : 2008.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최근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 화합에까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나.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다.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라. 공무원의 복장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마. 공무원의 근무시간,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공무원의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 사.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아.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

□ 칙 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천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
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에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4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 공무원에서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간 외 및 공휴일 등의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휴가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에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text{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text{12월}} \times \text{당해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에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함으로써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 ③ 여자공무원은 생리 및 임신한 때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⑥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부천시(이하 “시”란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현저하게 영리업무를 추구하는 행위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행위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추구하는 행위

제29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8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0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2. 부천시의회 의원

제5장 정치운동

제31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및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 시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②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 시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장·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제2항 관련)

대 인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하게 한다. • 민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한다. • <u>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u>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남에게 겸손하게 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출산	배우자	3
입양	본인	14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3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 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현행 조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 1973. 07. 01 조례 제95호
개정 1977. 02. 28 조례 제226호
전문개정 1977. 05. 15 조례 제265호
개정 1978. 03. 20 조례 제296호
개정 1979. 11. 01 조례 제354호
전문개정 1983. 06. 07 조례 제588호
개정 1985. 10. 30 조례 제726호
개정 1988. 01. 13 조례 제836호
개정 1989. 12. 23 조례 제1014호
개정 1989. 12. 23 조례 제1015호
개정 1993. 05. 25 조례 제1232호
개정 1994. 07. 06 조례 제1288호
개정 1996. 02. 29 조례 제1399호
개정 1997. 04. 21 조례 제1487호
개정 2000. 02. 10 조례 제1724호
개정 2001. 11. 29 조례 제1861호
개정 2002. 05. 24 조례 제1886호
개정 2004. 01. 15 조례 제1994호
개정 2004. 08. 09 조례 제2031호
개정 2005. 06. 10 조례 제2086호
개정 2006. 01. 13 조례 제2129호
개정 2007. 04. 12 조례 제2219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12>

제2조 (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2>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5.06.10>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개정 1996.02.29>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02.29>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02.29>

③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당직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01.15>

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1996.02.29>

제8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원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1994.07.06><개정 1996.02.29>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2장 근무시간 등<개정 1996.02.29>

제13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6.01.13>

④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 공무원 중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항신설 2007.04.12>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개정 1996.02.29>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02.29>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개정 2006.01.13>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0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1.13>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01.13>

제16조의2 (삭제)<2006.01.13>

제3장 휴 가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07.06, 1997.04.21>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개정 2004.08.09>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단서신설 2007.04.12>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2001.11.29><항신설 1997.04.21> [본조개정 1996.02.29]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02.29>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07.06>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04.21>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8.01.13><개정 1996.02.29>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6.01.13>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개정 1996.02.29>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1996.02.29,2002.05.24>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text{○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text{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text{12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항신설 2002.05.24>

③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04.21>

④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04.21>

제21조 (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07.06><후단신설 1996.02.29><개정 1997.04.2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4.07.06>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4.07.06>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 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1996.02.29>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개정 1996.02.29>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4.07.06>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개정 2002.05.24>
- 5의2.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07.4.12>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6.02.29>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1997.04.21>

제23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02.29>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02.29, 2000.02.10, 2001.11.29, 2007.4.12>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단서신설 2006.01.13>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00.02.10>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02.29>

⑥ 내지 ⑨ <삭제 2006.01.13>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7.04.21>

·⑪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향신설 2007.04.12>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개정 2006.01.13>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1.13>

제25조 (휴가기간의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신설 1997.04.21>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6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본조신설 2005.06.10>

제27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6조의 의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06.10>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2. 시의회의원<본조신설 2005.06.10>

제5장 정치운동

제29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본조개정 1996.02.29>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3.06.07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0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3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23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12.23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4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05.25 조례 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06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21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9 조례 제18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24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08.09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13 조례 제21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4.12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 내지 제59조, 제61조 및 제74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61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5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0條의3(兼任) 職位 및 職務內容이 유사하고 담당 職務遂行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般職公務員을 特定職公務員·特殊專門分野의 一般職公務員·大學教授等 教育公務員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관련 教育·研究機關 기타 機關·團體의 任職員과 서로 兼任하게 할 수 있다. 또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관련 教育·研究機關 기타 機關·團體의 任職員은 特殊專門分野의 別定職公務員으로 兼任시킬 수 있다.[全文改正 1981.4.20]

第30條의4(派遣勤務) ①任用權者는 그 業務遂行과 관련된 行政支援이나 研修 기타 能力開發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所屬公務員을 地方自治團體의 다른 機關·다른 地方自治團體·國家機關·公共團體·政府投資機關, 國內外的 教育機關·研究機關 기타 機關에 一定期間 派遣勤務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特殊業務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人事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地方自治團體의 機關·團體의 任職員을 派遣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②派遣權者는 派遣事由가 消滅하거나 派遣目的이 達成될 可望이 없는 경우에는 그 公務員을 지체없이 原 所屬機關에 復歸시켜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機關·團體로부터 派遣된 任職員은 職務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新設 1997.12.13>

④公務員을 派遣勤務하게 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機關·團體의 任職員을 派遣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節次와 派遣期間중의 服務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7.12.13>[本條新設 1978.12.6]

第47조(服務宣誓) 公務員은 就任할 때에 所屬機關長앞에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宣誓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就任후에 宣誓를 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82.12.28]

第48條(誠實의 義務) 모든 公務員은 法規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第49條(服從의 義務) 公務員은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上司의 職務上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50條(職場離脫禁止) ①公務員은 소속上司의 許可 또는 正當한 理由없이 職場을 離脫하지 못한다.

②搜查機關이 公務員을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81.4.20>

第51條(친절·공정의 義務) 公務員은 住民 전체의 奉仕者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執務하여야 한다.

第52條(秘密嚴守의 義務) 公務員은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第53條(清廉의 義務) ①公務員은 職務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謝禮·贈與 또는

響應을 授受할 수 없다.

②公務員은 職務上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上司에게 贈與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부터 贈與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第54條(外國政府의 榮譽등을 받을 경우) 公務員은 外國政府로부터 榮譽 또는 贈與를 받을 경우에는 大統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55條(品位維持의 義務) 公務員은 그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6條(營利業務의 兼職禁止) ①公務員은 公務 이외의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所屬機關의 長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業務의 限界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66.4.30, 1978.12.6>

第57條(政治運動의 금지) ①公務員은 政黨 기타 政治團體의 結成에 관여하거나 이에 加入할 수 없다.

②公務員은 選舉에 있어서 特定政黨 또는 特定人의 支持나 反對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投票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勸誘하는 것
2. 署名運動을 企劃·主宰하거나 勸誘하는 것
3. 文書 또는 圖畫를 公共施設등에 揭示하거나 揭示하게 하는 것
4. 寄附金品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公共資金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他人으로 하여금 政黨 기타 政治團體에 加入하게 하거나 加入하지 아니하도록 勸誘하는 것

③公務員은 다른 公務員에게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背되는 行爲를 하도록 要求하거나, 政治的 行爲의 報償 또는 報復으로 利益 또는 不利益을 約束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全文改正 1973.3.12]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27]

○ 전자정부법

제30조(온라인 원격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

第23條(在職期間의 計算) ①公務員의 在職期間은 公務員으로 任命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退職한 날의 전날 또는 死亡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年月數에 의한다. <改正 1995.12.29>

②退職한 公務員·軍人 또는 私立學校教職員(公務員年金法·軍人年金法 또는 私立學校教職員年金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는 제외한다)이 公務員으로 任用된 때에는 本人이 願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年金法에 의한 在職期間 또는 服務期間을 第1項의 在職期間에 合算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③公務員으로 任用되기 전의 兵役法에 의한 現役兵 또는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副士官의 服務期間(防衛召集·常勤豫備役召集 또는 補充役召集에 의하여 服務한 기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服務期間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在職期間에 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2000.12.30>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 또는 服務期間과 法律 第3586號 公務員年金法改正法律 附則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은 第4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退職手當 支給에 있어서는 第1項의 在職期間에 이를 合算 또는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1991.1.14>

⑤第4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退職手當 支給에 있어서는 在職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을 제외한 休職期間, 職位解除期間 및 停職期間은 그 期間의 2分の 1을 각각 減한다. <개정 2008.3.28>

1. 公務上 疾病·負傷으로 인한 休職

2. 兵役法에 의한 兵役服務를 마치기 위한 休職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臨時採用됨으로 인한 休職

3의2. 教育公務員法 제44조제1항제11호의 規定에 의한 休職

3의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한 休職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건강검진) ①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진횟수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건강검진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요양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 세대주에게 통보

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7.25]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개정 2008.7.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기간의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되, 징계처분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정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6.3.10, 2008.7.3>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경력등을 갖춘 자
4. 훈련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 모자보건법

第14條(人工妊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 ①醫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本人과 配偶者(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同意를 얻어 人工妊娠中絶手術을 할 수 있다.

1. 本人 또는 配偶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優生學的 또는 遺傳學的 精神障礙나 身體疾患이 있는 경우
2. 本人 또는 配偶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傳染性 疾患이 있는 경우
3. 強姦 또는 準強姦에 의하여 妊娠된 경우
4. 法律上 婚姻할 수 없는 血族 또는 姻戚間에 妊娠된 경우
5. 妊娠의 지속이 保健醫學的 이유로 母體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第1項의 경우에 配偶者의 死亡·失蹤·行方不明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同意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本人의 同意만으로 그 手術을 행할 수 있다.

③第1項의 경우에 本人 또는 配偶者가 心身障礙로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親權者 또는 後見人의 同意로,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없는 때에는 扶養義務者의 同意로 각각 그 同意에 갈음할 수 있다.